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74호)

나. 회부일자: 2021. 8. 26.

다. 상정일자: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9.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 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나. 주요내용

- 1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 신·구조문 대비표

-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북구 구세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